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99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이재관 · 안도걸 · 허성무
김원이 · 장철민 · 문진석
송재봉 · 이정문 · 정진욱
김승원 · 이해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

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u>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u>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 ----- -----.
<u><신 설></u>	1.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u>
<u><신 설></u>	2. <u>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u>
<u><신 설></u>	3. <u>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u>

<u><신 설></u> ② ~ ⑤ (생 략)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 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u>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 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u> 4. <u>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 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 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u> ② ~ ④ (현행과 같음)
---	--